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자동차관리법」의 개정으로 과태료 조문 번호 및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(안 제14조제1항제3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3호 중 “제5호,”를 “제7호·제9호·제10호,”로, “제10호·제12호·제13호·제13호의2·제15호의2·제18호·제18호의2·제18호의3·제19호”를 “제10호·제12호·제13호·제13호의2·제15호의3·제15호의4·제15호의5·제18호의3·제19호”로, “제5항제2호·제2호의2·제5호·제6호·제6호의2”를 “제5항제2호·제2호의2·제6호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 치)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“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 위로 부과받은 과태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.	제14조(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 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3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<u>제5 호</u> , 같은 조 제4항제1호 · 제2 호 · 제3호, 제5호부터 제7호 까지, <u>제10호 · 제12호 · 제13 호 · 제13호의2 · 제15호의2 · 제18호 · 제18호의2 · 제18호 의3 · 제19호</u> 및 같은 조 제5 항제2호 · 제2호의2 · 제5호 · <u>제6호 · 제6호의2</u> 의 규정에 따 른 과태료	3. ----- <u>제7호 · 제9호 · 제10호</u> , ----- ----- --- <u>제10호 · 제12호 · 제13호 · 제13호의2 · 제15호의3 · 제 15호의4 · 제15호의5 · 제18호 의3 · 제19호</u> ----- <u>제5 항제2호 · 제2호의2 · 제6호의 2</u> ----- -----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법무부	
연 락 처	(02) 2110 - 3736